

한·일간의 무역분쟁에 관한 사례연구

The investigation on international trade dispute between Korea and Japan.

이종원(Jong-Won Lee)

우석대학교 문화사회대 부교수

목 차

- | | |
|-----------------------------|-----------------------|
| I. 서 론 | IV. 한·일간의 김 수입쿼터 분쟁사례 |
| II. 한·일간의 무역분쟁 현황과 일본의 무역제도 | V. 결 론 |
| III. 한·일간의 PSF 반덤핑관세 분쟁사례 | 참고문헌 |
| | Abstract |

Abstract

International trade conflict has been increased since WTO has appeared. Like this, the cause that the number of international trade conflict has been increased is by means of enlargement of agreements range. But some new facts have been added. They are Anti-dumping, subsidy, Countervailing duty, Safeguard, the norm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e procedure of permitting importing products, Technical Barriers, agricultural products, and the area of textile.

Since Japanese government has decided to give labor import quarters to China without permission of Korea, Korean government formally presented the system of labor import quarter to WTO DSB due to WTO agreement disobedience of Japan.

Accordingly, this paper has the following purpose; to analyze situation on fiber dispute of Japan. Some methods about trade barrier against Japan need to be solved from another viewpoint owing to labor IQ dispute.

Key Words : WTO, international trade dispute, Japan, PSF, IQ, NTB

I. 서 론

세계화가 가속화 될수록 국제무역분쟁이 매년 크게 증가하여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 DSB)¹⁾에는 회원국 간의 수많은 분쟁이 접수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무역분쟁이 급증하게 된 원인은 몇 가지의 요인이 있다. 첫째, 협정의 구성범위의 확대에 의한 분쟁발생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즉,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수입허가절차, 관세평가, 기술장벽, 농산물, 섬유분야 등이 다자체제로 포함되었고,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TRIMs)이 새롭게 제정되었으며, 원산지 규정, 선적선 검사, 동·식물 위생에 관한 협정 등도 기존의 GATT를 보완할 수 있는 규정으로 새로이 제정되어 상품분야에서도 다자협정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다자간 무역체제가 기존의 무역장벽을 적극적으로 낮추고 새로운 무역이슈에 대한 관장범위를 확대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의 수출제품에 대한 선진국의 무역장벽은 여전히 완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선진국들의 전체수입제품에 대한 평균관세율은 매우 낮으나 개발도상국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수입관세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또한, 이들 선진국들은 수출자유규제, 수출가격규제, 반덤핑규제, 상계관세부과 등의 「비관세장벽」²⁾을 통하여 개도국의 수출제품에 대한 규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거나 강화시키고 있다

그 동안 섬유제품의 국제교역은 「다자간 섬유협정(MFA: Multi-fiber Textile Arrangement)」³⁾에 의한 쿼터제도에 의하여 유지되어 왔으나 WTO의 성립으로 2005년에 WTO로 통합이 추진되고, 2006년부터 섬유제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도 일반 공산품 등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수입규제조치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국제섬유분쟁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은 수량제한과 수입금지, 반덤핑관세 부과에 관한 분쟁인데, 한·일간에 주로 발생하고 있는 분쟁은 반덤핑분쟁이다. 반덤핑분쟁은 일반적으로 개도국과 선진국사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⁴⁾, 최근의 한·일간의 섬유분쟁과 같이 선진국과 이제 막 선진국에 진입한 신흥공업국가와의 사이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 1) WTO조직은 상위 의사결정기관으로써 2년마다 열리는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가 있고, 그 밑에 분쟁해결기관(Dispute Settlement Body) 및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무역정책검토키구(Trade Policy Review Body)가 있다. 사무국은 패널(분쟁해결소위원회)을 사무적으로 지원하며, 개도국에 대한 법률자문 및 지원, 분쟁해결 전문가 양성을 위한 특별연수과정 운영 등의 역할을 한다. DSB의 일정 조정이나 의사진행의 준비, 의사록의 작성 등은 사무국에서 담당하며 상소사건은 상급위원회 사무국에서 별도로 다루게 된다. DSB는 각료회의의 기능을 대신 수행하는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가 필요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한다. DSB는 패널의 설치, 패널보고서와 상소기관보고서의 채택, DSB의 결정과 권고의 이행에 관한 감독 및 보복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갖게 된다. 신경환 외, 『세계화와 국제통상』, 두남출판사, 1998, pp.226-228.
- 2) 「비관세장벽」은 흔히 NTB(Non-tariff Barrier)라고 약칭하고, 수입품에 의한 국내상품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에 의하지 않고 행하는 수입억제수단을 말한다.
- 3) 「다자간 섬유협정」이란 섬유무역의 확대와 자유화를 도모하고 수출입시장에서의 교란요인을 제거할 목적으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 1973년 12월에 마련한 다국간협정을 말한다. 동 협정은 기존의 2국간의 쌍무협정을 철폐하고 섬유수입으로 시장이 교란되었을 때에는 관계수출국과 협의하여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4) 개도국의 경우 국내법 WTO반덤핑 협정에 일치하지 않거나 혹은 그 투명성이 낮아 비교적 자주 분쟁에 관련되고 있다. 이종원, "개발도상국의 분쟁사례를 통한 우리 나라의 대응방안", 『국제상학』, 제18권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03, p.221.

또한, 최근 한일간의 비관세장벽 분쟁으로서는 가장 중심이 되었던 사안은 김 수입쿼터(IQ: Import Quota) 분쟁이었다. 특히, 우리에게 있어서 김 수입쿼터 분쟁은 농수산물분야에서 일본과 많은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유사한 분쟁은 우리에게 커다란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협의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⁵⁾.

일본은 지난 50년간 수입쿼터제를 통하여 자국의 김 수입을 제한하여 왔으며, 우리가 수출을 재개한 1995년부터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수입쿼터를 독점적으로 배정해 왔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굳이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우리정부와 협의 없이 2005년부터 김 수입쿼터를 중국에도 할당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의 권익이 침해되게 되었고,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지난 2004년 10월 일본정부가 2005년부터 중국에도 김 수입쿼터를 할당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국이 그간 대일 김 수출을 독점해 온 기본구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워졌으며, 바뀐 수입쿼터 배정방식에서는 일본정부의 결정 여하에 따라 한국산 김의 대일 수출물량이 크게 좌우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근 한일간의 무역분쟁으로 크게 주목을 받았던 두 사례를 중심으로 분쟁과정과 문제점 및 시사점,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2장에서는 한일간의 분쟁현황과 일본의 관세 및 통관에 관하여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2001년에 분쟁이 되었던 한국산 PSF(폴리에스터단 섬유: Polyester Staple Fiber)에 관한 반덤핑관세 부과 건에 대한 사례를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2005년도에 분쟁이 되었던 한일간의 김 수입쿼터 분쟁 경위 및 과정, 그리고 합의 결과를 분석하고, 결론으로 한일간의 무역분쟁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II. 한·일간의 무역분쟁 현황과 일본의 무역제도

1. 한·일간의 무역분쟁 현황

WTO출범 이후, 최근까지 분쟁해결기구에 회부된 협정별 분쟁 사항, 즉 「수량제한 및 수입금지」, 「반덤핑」, 「관세」, 「세이프가드」,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TRIMs)」⁶⁾ 등으로 분쟁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 관련분쟁이 국제분쟁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⁷⁾.

주요 분쟁분야는 선진국은 주로 2, 3차 산업과 지적재산권분야와 반덤핑에 관련되어 있고, 개도국은

5) 2004년 금액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전체 수산물 수출의 65.3%를 일본으로 수출하였고, 2005년에는 우리의 농산물의 대일 수출이 당시 전체 농산물 수출의 33%(6.20억달러)를 차지하였다.

6) TRIMs 협정은 자유무역의 확대와 제3국으로의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WTO의 한 규정이다.

7) 이종원(2003), 전계서, p.222.

주로 1, 2차 산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다. 한일간의 국제분쟁은 반덤핑관련 분쟁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대일 반덤핑 사례는 모두 11건을 기록하고 있다(반덤핑관세부과 : 7건, 가격약속 : 3건, 조사 중 취하 : 3건). 또한, 최근의 한국산 DRAM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건⁸⁾과 한국산 김 수입할당 건⁹⁾에 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1참조>.

<표 1> 한일간의 무역분쟁 사례 현황

신청일	품목	여타 피제소국	비고
88. 06.3	D.C.P	대만	종료(가격약속)
90. 05.8	폴리아세티탄 수지	미국	종료
93. 03.12	PS인쇄판		발동 중
93. 08.9	유리장섬유	미국, 대만	종료
96. 02.7	리튬1차전지	미국	종료
96. 06.14	전기면도기	화란, 독일, 중국	종료
97. 10.16	폴리비닐알콜		발동 중
99. 02.18	복합호제		발동 중(가격약속)
99. 09.13	알카리 망간건전지	싱가폴, 중국, 미국	발동 중(가격약속)
00. 12.29	셀프복사기	중국, 인니, 태국, 미국	01.5.조사취하
01. 04.23	폴리에스터단 섬유	대만	관세부과
04. 06.16	한국산 DRAM		종료
05. 02.24	한국산 김		종료

자료: 「일본정부, 한국 및 대만산 폴리에스터단 섬유(PSF)에 반덤핑관세 부과」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 아태통상과, 2002 ~ 2005년 자료 요약정리.

- 8) 2004.6.16(수) 일본의 반도체 제조업체인 Elpida 및 Micron Japan은 한국의 하이닉스로부터 일본으로 수입되는 DRAM에 대하여, 부당한 보조금의 지급을 이유로 상계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일본 재무성에 제출하였으며, 일본 재무성은 이를 수리하였다. 04.8.3(화) 일본 정부는 한국의 Hynix DRAM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금번 조사 개시 결정은 지난 6.16(수) 일본의 DRAM 생산업체인 Elpida 및 Micron Japan이 Hynix DRAM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일본 정부에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2004.6.
- 9) 정부는 2005.2.4(제네바 현지시간) 김에 대한 일본의 수입쿼터(IQ; Import Quota) 제도의 WTO 협정 위반여부를 판단할 WTO 패널 설치를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명의의 분쟁해결기구(DSB) 의장 앞 서한을 통해 WTO에 정식 요청하였다. 정부는 일본의 김 수입쿼터(IQ:Import Quota) 제도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량제한 조치를 금지하고 있는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일본에 대하여 2004.12.1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그후 양국 정부는 2차례의 양자협약('04.12.23 및 '05.1.21)를 개최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번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된 것이다.

한일간의 무역 분쟁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제3장에서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PSF반덤핑」과 같이 제품의 수출가격 문제로 인한 분쟁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의 결과, 세이프가드협정이 한층 강화됨으로써 세이프가드조치보다는 반덤핑조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점도 있지만, 협정규정이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조항에 대한 자의적 운용과 해석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4장에서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김 수입할당건과 같은 비관세장벽이다. 정부는 일본의 김 수입쿼터제도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량제한 조치를 금지하고 있는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일본에 대하여 2004년 12월에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그 후 양국 정부는 2차례의 양자협약('04.12.23 및 '05.1.21)을 개최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된 것이다.

현재 국제적으로 선진국 중에 김과 다시마 등 17개 수산물 수입쿼터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여 이들 수산물을 포함한 농산품에 대한 양국 간의 무역분쟁은 작은 부분에서도 자주 분쟁이 되고 있다. 결국, 문제발생시 양국 간의 실무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되어 왔으나, 금번 정부는 김에 대한 일본의 수입쿼터제도의 WTO 협정 위반여부를 판단할 WTO 패널 설치를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명의의 분쟁해결기구 의장 앞 서한을 통해 WTO에 정식 요청하게 된 만큼 양국 간의 커다란 주요 사안이 되었다.

2. 일본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

일본으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관세, 내국소비세 및 지방소비세가 과세된다. 일본의 관세율에는 기본세율, 잠정세율, 특혜세율, 협정세율이 있다. 협정세율에는 WTO의 설립에 따라서 199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WTO협정세율이 있다. 일본에서 이러한 세율의 적용은 원칙적으로 특혜세율, 협정세율, 잠정세율 그리고 기본세율의 우선순위로 적용되며, 단 특혜세율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한정되며, 협정세율은 그것이 잠정세율 또는 기본세율보다도 낮은 경우에 적용된다.

1997년 일본의 평균관세율은 9.4%이고 수입관세부과품목(tariff lines)의 60%는 5%이하였다. 1997년 이후, 공산품(HS Chapters 25 to 97)에 대한 평균관세율은 최고 5%이하로 점차 낮아지고 있고, 실제로 자동차와 그 부속품, 소프트웨어, 컴퓨터, 산업기계 등의 주요 분야에서는 관세율이 0%이다. 그러나 특별한 농산물, 식료품, 섬유, 신발류 등의 관세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고, 품목에 따라서는 20~30%의 높은 고관세율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관세요율은 HS¹⁰⁾조약에 기초하여 HS품목 표를 필요에 따라 세분하여 작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관세분류는 HS조약에 따르고 있지만, 자국의 필요에 따

10) 「HS(조화제도)」는 Harmonized System의 약으로서 미국을 비롯한 구미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통일된 관세분류방식이다. HS의 원어는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이다. HS는 원활한 국제무역의 진작, 무역통계의 수집·비교분석을 용이하게 하며, 나아가서 상업목적의 상품분류에도 사용할 수 있는 품목 표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 세분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입금지 및 고율의 관세부과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일본의 특혜관세제도에서 공업제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현재 한국은 특혜관세의 부분적 적용제외조치의 국가이다.

일본의 섬유 및 의류(HS 11류)에 대한 가중평균 법정관세율은 11.5%로 미국의 19%보다는 낮으나 EU와 같은 수준이다. 그런데 일본으로 수입되는 섬유제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도 여타의 선진국과 비교하여 낮거나 동등한 수준이지만, 품목에 따라 기본세율 및 WTO 「양허세율」¹¹⁾이 10%~17%의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도 많다. 그런데 한국의 대일 수출섬유제품은 대부분이 이러한 기본세율과 WTO 양허세율이 고율인 품목에 해당한다.

일본의 표준제도, 검사제도, 상표부착제도가나 인증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입되는 제품은 일본의 각종 국내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일본고유의 표준에 일치한다는 인증이 없으면 수입되거나 일본 국내에서 판매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일본 고유의 제도는 외국기업의 일본시장접근에 주요한 장벽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적 장벽은 「가정용품」에서도 엿볼 수 있다. 즉, 일본의 「가정용품 품질표시법」은 가정용품의 품질에 관한 표시의 적정화를 도모하여 일반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무관청은 통상산업성이다. 동 법은 정령¹²⁾에 지정되어 있는 가정용품에 대하여 표시의 표준(표시되어야 할 사항 및 표시할 때에 준수되어야 할 사항)이 각각 규정되어 있고, 가정용품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등은 표시의 표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표시를 하여야 하며, 적정한 표시를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지시, 공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정용품표시법의 적용 대상에 섬유제품(textiles), 전기기계기구(electrical appliances and apparatuses), 합성수지 가공품(plastic products), 잡화공업품(miscellaneous household/consumer goods)이 있다.

동 법에 따라서 「섬유제품」¹³⁾을 일본 내에 판매 또는 진열 시 섬유의 組成, 표시자명 및 주소 또는 전화번호, 가정세탁방법 등의 취급방법(특히 의류의 경우) 등과 같은 표시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의류제품, 의류부속품의 수입품은 일본어로 쉽게 해석될 수 있는 방법(가정세탁 등 취급방법은 페매어 부착한 것에 한함)으로 품질표시를 하지 않으면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그리고 가정용품품질표시법에는 규격표시방법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JIS(공업표준화법: Japanese Industrial Standard Institute)¹⁴⁾에 의류제품에 대한 규격표시기준을 정하고 있다.

11) 「양허세율」은 다자간 협상과정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관세의 세율을 말한다. 일단, 관세를 양허하면 공인세율 그 이하로 인하할 수는 있어도, 그 이상의 관세부과는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해당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협상을 할 여지는 있다.

12) 政省令 및 告示에는 家庭用品品質表示法施行令, 纖維製品品質表示規則, 纖維製品品質表示規程, 合成樹脂加工品質表示規程, 雜貨工業品質表示規程, 電氣器械器具品質表示規程이 있다. 통상산업성, 일본관세법.

13) 「섬유제품」이란 견직물, 모사, 모직물, 면사, 면직물, 아마사, 아마직물, 합성섬유직물, 방직용섬유(바이루)의 잠자리용 깔개, 타베스트리 카펫, 뽀이루직물, 메리야스편물, 의류 유아복, 의류부속품(양말, 장갑, 스타프, 네트프라자, 손수건, 텍타이 등), 카텐, 타올, 린넨류 등의 품목을 말한다.

14) 일본에서는 테스트와 인증을 통하여 제품에 부착되어야 하는 품질마크가 여러 가지가 있다. 일본의 품질마크도 국내의 특별법에 의한 강제적인 것과 자율적인 것이 있다. 강제적 또는 자율적 품질마크를 획득하기 위하여는 품질관리 평가를 위한 제품형식승인과 공장검사가 요구된다. 일본의 강제적 품질마크에는 T마크, S마크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섬유제품과 관련하여 등산용 로프나 장비는 S마크가 부착되어야 한다. 일본관세당국은 관련 강제적 품질마크를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OECD의 비관세장벽 분류¹⁵⁾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술적 조치(technical measures)」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통관절차 및 검역기준 등의 각종 기술적 조치에 대해서 일관되게 비관세장벽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무척 어렵다. 그러나 일본시장의 진출 어려움이 그들의 까다로운 통관절차 및 검역기준 등에 있는 것을 감안해 보면, 이것을 고려하지 않은 통계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일본의 고충처리기구(OTO : office of trade and investment ombudsman)에 접수된 대일 수출 및 투자의 고충사례(총 452건)를 살펴보면, 많은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인증, 검역 등과 관련된 기술적 조치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의 조사에서도 일본세관에서 과도한 통관 수수료를 부과한다거나, 통관절차에 있어서 과도한 검역기준과 한국 내 검사결과의 불인정 등의 문제점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일본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통관 시에 규제하거나, 수입 장벽으로 인하여 많은 외국수출 기업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에 수입통관절차에 있어서 「예비심사제」¹⁶⁾의 도입으로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미국통상대표부(USTR)의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Trade Barriers」에 따르면, 일본의 수입통관절차는 여전히 선진국의 기준과 비교하여 느리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상태라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주요 공항 및 항만 이용료(user fees)가 높다. 또한, 1997년 10월에 도입된 「가산제도」¹⁷⁾는 세관수속을 느리게 하고 있고 수입수속비용의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외국의 수출자와 일본의 소비자에게 코스트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는 수입 장벽이 되고 있다. 그리고 상품에 대한 기술규정 및 표준과 같은 표준화제도로 인하여 국가 간의 상품이동에 있어서 커다란 장벽이 되고 있다. 이를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¹⁸⁾으로 지칭한다. WTO에서는 자국의 표준화제도를 의도적으로 까다롭게 하거나 타국과 달리 규정하여 본 제도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¹⁹⁾.

부착하지 않은 수입제품에 대하여 일본으로의 반입을 불허하고 있다. 일본통상산업성, 「輸出入通關時の税關手續について」, <http://www.mof.go.jp>

- 15) OECD의 비관세장벽 분류는 8개항으로 되어 있다. 즉, 1)관세조치, 2)준관세조치, 3)가격규제조치, 4)금융상의 조치, 5)자동허가제, 6)수량규제조치, 7)전매조치, 8)기술적 조치로 되어 있다.
- 16) 「예비심사제」란 화물이 일본에 도착하기 전 또는 식품수입 등의 경우에는 수입통관수속이 끝나기 전에 수입신고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세관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화물은 생선화물, 거래선으로의 납기가 엄격한 화물, 크리스마스 등과 같이 납기가 한정되어 있는 화물, 타법령 수속이 필요한 화물, 수입신고 화물의 종류가 많은 경우와 같이 서류심사에 시간이 요하는 화물 등이다. 일본대장정, 「平成9事務年度における輸出入通關時の税關調査について」, p.79.
- 17) 일본은 1997년 10월 1일부터 관세법 등의 개정에 의하여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 및 소비세에 대하여 「가산세제도(過少申告加算税 및 無申告加算税)」를 도입하였다. 동 제도의 도입 이유는 세관에서의 사후조사건수와 사후조사에 의하여 적발되는 신고누락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납세신고를 확보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한다는 관점에서 수입화물에 부과되는 관세 및 내국소비세의 경우에도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의 내국세와 같이 신고가산세(10%) 및 무신고가산세(15%)를 도입하게 되었다. 전게서, p.82.
- 18) TBT는 무역의 기술적 장벽에 관한 것으로서 WTO협정의 한 규정으로서 국제조직과 각 가맹국이 독자적으로 정하고 있는 강제규격 및 임의규격이 자유무역에 저해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규정이다.
- 19) 이종원, 「WTO관련 환경규정에 관한 고찰」, 「상사법 연구」, 제19권3호, 한국상사법학회, 2001.p.472.

〈표 2〉 일본의 대표적 대한국 비관세장벽 내용

대표적 비관세장벽 내용	⇒ 통관 시 장벽내용
수입쿼터(수입제한)	-과도한 통관검사 수수료 및 공항항만 이용료
까다로운 통관절차	-3국간 무역 시 세관에서 原수출자 Invoice등 요구
계열구조로 엮인 구매 관행	-수출입 화물운송 특수차량에 대한 일시 통관 불허
복잡하고 폐쇄적인 유통구조	-농산물 및 수산물에 대한 엄격한 검역
시장접근 상관행	-자동차소량 인증제도(PHP) 및 JIS등 까다로운 검사와 인증 취득 제도

자료: 무역협회(2006),요약정리.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인하된 관세를 대신해 등장한 비관세장벽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특히 일본진출에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OTRA가 우리 중소기업 15개 주요수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주요국의 비관세장벽(NTBs) 현황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이 총 261건의 비관세장벽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별로는 중국이 35건으로 가장 많고 EU가 30건, 미국과 일본이 각각 27건으로 조사됐고, 유형별로는 기술장벽이 87건으로 총 건수 중 33%를 차지하였고, 수입허가 68건, 통관절차 3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KOTRA에 따르면 최근 세계 각국은 산업보호 수단 혹은 국민건강·환경보호·국가안보 등 주요 정책목적 달성 수단으로 비관세 장벽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수입할당, 관세할당, 차별적인 세제적용, 이중 검사·검역, 기술장벽, 유통장벽, 수입 쿼터(수량 제한), 까다로운 통관 절차, 계열구조로 엮인 구매 관행, 복잡하고 폐쇄적인 유통구조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가격 요구, 반품책임 전가 등의 상관행, 가전제품재활용제도, 한국산 소주에 대한 주정(酒精)분류, 국제기준보다 높은 식품첨가제 허용기준 등이 우리기업의 시장진입에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Positive List System²⁰⁾」 도입<표3참조>, 즉 일본은 식품 중 농약 등 잔류기준 적용에 있어 네거티브 방식에서 2006년 5월 29일부터 자국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PLS로 전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농수산물에 대한 수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본은 이번 김 수입쿼터가 철폐될 때 그에 준하는 대안으로 TRQ²¹⁾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동 제도는 수량제한 제도보다는 무역제한 효과가 작은 제도이지만, 쿼터 밖 세율이 매우 높아 정상적인 시장조건 하에서 수입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²²⁾.

20) PLS는 통관 시 잔류농약이 일괄기준치인 0.01ppm을 1회 초과 검출되면 5% 샘플검사에서 50% 샘플검사, 2회 초과 검출되면 전수검사 조치로서 0.01ppm이라는 기준치는 25m 수영장에 몇 손가락의 소금을 풀어 넣은 농도와 같다. 미국, EU, 캐나다,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등 구미 지역에서도 PLS (0.1-0.01ppm 기준)보다 강화된 수준이다.

21) TRQ제도는 일종의 이중관세제도이다. 어떤 품목의 수입이 설정된 쿼터물량(이것을 TRQ물량이라고 한다)이내일 경우 낮은 쿼터내세율(in-quota tariff)이 적용되고 그를 초과한 수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쿼터밖세율(out-quota tariff 또는 over-quota tariff)이 적용되는 이중관세구조를 말한다.

<표 3> Positive List System

네가티브		포지티브
-잔류기준(283개) 있으면 초과시 유통 규제 -잔류기준 설정이 없으면 농약성분 등의 검출 식품도 자유 유통	→	-잔류기준(799개) 있으면 초과시 유통 규제 -잔류기준 없으면 0.01ppm 초과시 유통규제 -공시된 인체 무해물질(65)은 적용 제외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내부자료(2007년).

주: Negative List하에서는 기준치 미설정으로 규제를 받지 않던 물질에 대해서도 PLS도입으로 일률적인 기준(0.01ppm)을 설정,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경우 해당 식품의 유통·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식품관리제도의 대폭 강화를 의미.

III. 한일간의 PSF 반덤핑관세 분쟁사례

1. 반덤핑부과의 경위

지난 2001년 4월 23일 일본정부는 한국 및 대만산 PSF(HS : 5503.20)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다. 일본정부는 당초 조사개시 후 1년이 되는 2002년 4월 22일까지 한국 및 대만산 PSF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이해관계자(interested parties)로부터 추가적으로 제출된 증거검토 등을 위해 조사기간을 3개월간 연장키로 결정하고 이를 한국정부에 통보해 왔었다.

한국정부는 상기 반덤핑 조사가 최근의 한일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만큼, 그간 2차례에 걸쳐(2002년1월 및 6월) 일본 측 조치가 WTO 반덤핑협정에 저촉되는 구체적인 사유를 문서로 전달하였으며, 동년 7월 16일 동경에서 개최된 「한일 고위 경제협의회」 시 일본 측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하였다. 또한, 한국정부는 동제품에 대한 일본의 반덤핑 조사가 국내 관련생산 업체에 있어서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그간 외교채널 등을 통하여 일본 측 조치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지적하고 동 조사의 종료를 요청하는 등, 그 동안 적극적으로 정부 및 관련 업계의 접촉²³⁾이 있어 왔다.

22) UR 농업협상의 타결과 관세화로의 전환에 따라 GATT의 수량제한 조치는 모두 철폐되어 TRQ관리와 관련된 UR 농업협정 문상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TRQ관리방식을 직접 규제하고 있는 GATT나 WTO 조항은 없다고 볼 수 있다.

23) 2001년 5월 15일에 이원호 화섬협회 회장이 방일하여 업계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2001년 7월 12일에는 지역통상국 심의관이 방일하여 일본경제산업성과 재무성 관계자와 협의를 하였다. 또한, 2002년 4월 15일에는 동 문제에 관한 본부장이 방일하여 경제산업대신에게 동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에 대한 신중한 대응 조치를 제차 요구하였다.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 일본담당과, 「일본의 PSF반덤핑 조사 관련 대응일지」, 2002,7.

그러나, 일본정부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2002년 7월 19일에 동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본 측 반덤핑조사를 위한 신청자 주장 요지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표4 참조>.

<표 4>일본 측의 PSF 반덤핑조사 신청서 요지

일본측의 근거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및 대만산 PSF에 관한 관세정률법 제8조제5항에 의거 조사 ○ 부당염매관세에 관한 정령 제8조에 의거 고시 ○ 고시일자 : 2001.4.23.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 폴리에스터단 섬유(Polyester Staple Fiber : PSF) ○ 특징 : PSF(3.5 ~ 20 denier 및 길이 25 ~ 80 mm) ○ HS 분류코드 : 5503.20 ○ 용도 : 이불 용 솜 및 부직포(화학 섬유를 접착제로 결합한 천으로 주로 의복에 사용)
반덤핑조사 관련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관련기업 : 제인주식회사 등 5개회사 ○ 한국 관련기업 : 대양, 휴비스, 고함 등 6개회사가 주요 공급자(일본 측 관련기업이 반덤핑조사 신청서에 제기한 업체임) ※ 일본 측 반덤핑 조사시 한국 30개업체에 대해 조사 ○ 대만 관련기업 : 청신섬유 등 8개 회사
조사개시일	2001. 4. 23.
조사대상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덤핑판매된 PSF 수입기간 : 2000.4.1 - 2001.3.31. ○ 덤핑판매된 PSF 수입에 의한 일본산업의 실질적인 손해발생 기간 : 1998.4.1 - 2001.3.31
조사대상 관련사개요	<p>가. 덤핑판매된 PSF 수입관련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가격(수출시 통상 거래가격 또는 이에 준하는 가격) ○ 대일본 수출가격 ○ 덤핑마진 :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액 <p>나. 덤핑판매된 PSF 수입이 일본산업에 미치는 실질적인 손해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량 ○ 수입이 일본 「동종상품」 1) 가격에 미치는 영향 ○ 수입이 일본 동종상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 ○ 수입이 일본산업에 미치는 실질적인 손해 사실 유무판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

자료: 「일본 정부, 한국 및 대만산 폴리에스터단 섬유(PSF)에 반덤핑관세 부과」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 아태통상과, 2002.7 요약정리.

1) 「동종상품」이란 고려대상인 물품과 모든 면에서 유사한 물품을 의미하며, 그러한 물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록 모든 면에서 유사하지는 않더라도 매우 유사한 특징을 지닌 물품을 의미한다.

2. 반덤핑부과의 문제점

일본기업이 동제품에 관하여 신청한 기업은 총 5개사로 이들 기업이 국내 총 생산량에 74.3%(2000년 기준)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덤핑 판매된 PSF 수입관련 사실로 한국 및 대만 내 판매가격(정상가격)으로부터 수출가격인 일본 내 수입통관가격으로부터 해상운임을 제외하고 산정한 결과 양국의 덤핑 마진율이 한국이 1999년1월부터 2000년11월까지 평균 32.5%이고, 대만이 1999년2월부터 2000년11월까지 평균 8.8%라고 제시하였다²⁴⁾.

일본정부는 자국의 PSF생산기업의 피해 주장을 받아들여서 2001년 4월 23부터 한국(30개 업체) 및 대만산(8개 업체) PSF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하여 2002년 7월까지 약 15개월간 조사하였다. 15개월간의 조사를 마친 뒤, 일본정부는 한국기업과 대만기업의 덤핑에 의한 일본산업에 미친 실질적인 손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한국 및 대만으로부터 수입량이 절대적·상대적으로 증가 중이며, 이에 따라 일본 제소기업의 판매량이 현저히 감소²⁵⁾하고 있다는 것. 둘째, 한국 및 대만으로부터 수출가격이 일본 국내제품보다 판매가격이 낮아, 제소기업 5개사의 국내 판매가격의 하락²⁶⁾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셋째, 이에 따라, 일본 국내산업의 판매수량 및 조업률의 감소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매출액 감소 및 수익성 악화²⁷⁾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표 5〉한국의 PSF의 대외 수출

(단위: 천불)

	1999	2000	2001	2002(1-3)
수출총액	589,642	682,163	548,790	109,130
중국(1위)	243,311	278,184	198,023	33,665
미국(2위)	78,645	85,475	79,849	21,208
독일	13,233	20,693	21,600	5,602
영국	11,116	21,693	21,600	5,602

24) 덤핑율에 관한 내용은 이진호, "일본, 독일, 네덜란드, 중국산 전기면도기 덤핑율 최종결정에 관한 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Law」.8.vol, 1997, p.16. 참조. 덤핑율=정상가격-덤핑가격/덤핑가격×100.

25) 한국산 : '97년 3,237톤(2.9%)에서 '99년 7,022톤(6.1%)로 117% 증가, 대만산 : '97년 2,179톤(1.9%)에서 '99년 3,988톤(3.5%)로 83% 증가, 제소기업측 : '97년 74,804톤(66.0%)에서 '99년 69,144톤(60.4%)로 8% 감소() : 괄호는 일본 국내 시장 점유율. 외교통상부, 2002.

26) 한국 : '97년 174엔/kg에서 '99년 104엔/kg로 40% 감소, 대만 : '97년 154엔/kg에서 '99년 114엔/kg로 26% 감소, 제소기업측 : '97년 205엔/kg에서 '99년 179엔/kg로 13% 감소. 외교통상부, 2002.

27) 제소기업 총매출액 : '97년 100 기준에서 '99년 81로 감소, 제소기업 손실 : '97년 100 기준에서 '99년 140으로 증가. 외교통상부, 2002.

이탈리아	26,555	26,978	19,286	3,846
~	~	~	~	~
일본(18위)	6,336	6,541	4,088	1,049
대일수출비중	1.07%	0.95%	0.74%	0.96%

자료 : 「일본 정부, 한국 및 대만산 폴리에스터단 섬유(PSF)에 반덤핑관세 부과」,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 아태통상과, 2002.7 요약정리.

이러한 일본정부의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제시된 문제점은 어떤 의미로는 상당부분이 자의성이 강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이고, 자국 기업의 우선적 보호를 하고자 함이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앞서 지적된 동제품의 절대적·상대적 증가라는 측면에서 사실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PSF 생산업체는 중국, 미국,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 등지에 연평균 약 6억 달러 상당의 PSF를 수출해 왔으며, 2001년 일본으로의 수출액은 약 400만 달러로 한국의 PSF 총수출 규모(2001년 5.5억 달러) 중 1% 미만이라는 점을 먼저 들 수 있다<표5참조>. 사실, 한국의 동제품에 대한 주요 수출대상국은 중국으로 평균 40%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일본으로의 수출은 순위로는 18위로 대일 수출이 전체 수출비중의 1%미만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본정부의 주장은 한국제품이 자국 시장점유율의 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측의 조사에 의하면 일본시장 점유비율은 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자국 중심적 및 자의적 판단으로 인하여 동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한국 업체들은 대만 보다 높은 관세율 부과 관정을 받게 되었다²⁸⁾.

IV. 한일간의 김 수입쿼터 분쟁사례

1. 김 수입쿼터분쟁 경위

근대적인 한일간의 김 교역은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강점 하였던 1932년부터 시작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일본은 1941년에 농림부산물통제규제를 실시하게 되고 김의 집하 배분 기관은 계획 통제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패전과 한국의 광복으로 양국 간에는 국경이 생기고, 이에 따른 교역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64년 이후부터 김에 대한 수입할당량이 정착되기 시작하여, 1965년의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 당시 양국은 김의 수출입 쿼터를 연간 250만속(1속(束)=100매에 해당)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김 사정은 1973년과 1975년의 생

28) 일본정부가 PSF 생산업체에 부과한 반덤핑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4개업체 (삼영, 대양, 성림, 휴비스) : 덤핑사실 없음, 1개업체 (삼흥) : 6.0%, 기타 25개업체 : 13.5%, 대만 8개업체 : 10.3%. 외교통상부, 2002.

산 불황에 의해 한국 정부는 김 수출 금수조치를 내리게 되었다. 이 결과로 1978년부터 1994년까지 한국 김은 일본으로 수출되지 못하다가, 1995년부터 시범적 수출이 이루어졌고 본격적인 김 교역은 1997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김 교역이 이루어지지 않던 기간에 WTO체제의 출범, UR 등의 국제교역 관련 이슈가 문제화 및 정착화 되어 김과 관련한 일본의 수입할당 문제는 크게 거론되지 못하고, 일본은 1978년 이전의 수입할당을 그대로 유지하기에 이르렀다. 1995년 이후 현재까지 일본의 김 수입할당량은 서서히 늘어 2004년 현재는 240만 속²⁹⁾, 2005년에는 400만속 속으로 늘어났지만, 2005년부터 김 수입할당이 한국 단독 수출에서 수입할당량 내에서의 전 세계 개방으로 바뀌면서 실제 김을 생산하고 수출이 가능한 한국과 중국이 일본 시장을 놓고 경쟁하게 된 것이다. 이는 2004년부터 본격 협상에 진입한 한일 FTA에서도 김 수입할당의 문제는 여섯 차례의 협상에서 매번 등장하여 양국 간의 매우 민감한 시안이었다.

<표 6> 일본 김 수입쿼터 추이(단위:만속)

연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만속	20	33	40	57	69	120	150	180	210	240	미정

자료: 외교통상부 아태담당 내부자료(2007년).

최근 일본 김 업체의 중국 투자진출이 늘면서 중국산 김 생산량이 급속히 증가했을 뿐 아니라 중국산 김은 한국산 김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있는 바, 제한된 수입쿼터물량 하에서 중국과 경쟁 시 우리 측 피해가 예상되었다³⁰⁾. 특히 일본은 금액기준으로 대만과 함께 한국의 2대 주요 김 수출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본의 수입쿼터 할당의 변화는 한국의 김 수출에 적지 않은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었다.

<표 7> 한국의 김 수출 내역 (2004년 기준)

물량기준(톤)		금액기준(만불)	
국가	무게 (비중)	국가	금액 (비중)
미국	3,618 (54%)	대만	1,613 (37%)
일본	622 (9%)	일본	1,323 (31%)

29) 한국산 김의 판매량은 240만속(2004년 기준)으로 이는 일본 김 시장 점유율 2%에 불과 수치고, 일본 내 일본산 김의 판매량은 1억 200만 속으로 전체시장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30) 현재 일본 국내 김 생산단가는 속당 11\$, 대일수출 한국산 김 평균단가는 속당 7~10\$, 중국산 김의 국제가격은 속당 3~4\$로서 중국산 김이 한국산 김에 비해 2~3배 저렴하다.

대만	568 (8%)	미국	471 (11%)
총수출	6,730(100%)	총수출	4,320(100%)

자료: 수산물 수출입정보시스템 자료(2005년).

2. 김 수입쿼터분쟁해결 과정

지난 2004년 12월 1일 우리 정부는 WTO협정 위배를 이유로 일본 김 수입쿼터 제도를 WTO에 제소하였고, 2005년 3월 21일 WTO분쟁조정기구회의에서 패널설치가 최종 결정되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이러한 WTO분쟁해결절차 외에도 우리 측에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2004년 12월 이후 일본 측의 요청에 따라 수차례의 양국 정부 실무자간 협상을 진행하면서, 김 수입쿼터에 관하여 한·일 양국 간에는 매년하반기에 수산당국간의 과장급회담을 개최하여 다음해 수입쿼터물량 수준을 협의하고, 이를 토대로 일본정부가 매년 2월 초순에 한국에 대한 김 수입쿼터 물량을 발표하는 것이 관례였다.

한·일 FTA 협상에서 우리 측의 일본 수산물(김 포함) 수입쿼터 철폐 요구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일본 수산청은 이 기회에 우리 측의 이러한 요구를 철회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강경한 대응을 보였다. 즉 일본 수산청은 한국이 FTA 협상에서는 수산물 수입쿼터제도 자체의 철폐를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2005년도 김 수입쿼터 물량 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한편 중국이라는 새로운 경쟁상대가 등장한 상황에서 한국이 김 수입쿼터 확보를 위해서는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다는 약점을 최대한 이용하겠다는 의도로 2005년도 김 수입쿼터도 보장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측은 일본 측과의 협의를 통해서 김 수입쿼터 물량을 확보하고, 향후 중국산 김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했다. 그 전략으로 일본의 김 수입쿼터 제도를 WTO에 제소하고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서 해법을 모색한다는 것이었다. 우리 정부는 무역자유화와 각종장벽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WTO 협정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쿼터와 같이 자유로운 무역의 장애가 되는 수량제한조치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표 8〉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수입쿼터 분쟁 개요

시 기	개 요
2004.12.01	일본 김수입쿼터제도를 WTO협정 위반을 이유로 WTO에 제소 (일본정부에 WTO 분쟁해결절차에 의한 양자협의를 요청)
2004.12.23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국 정부간 1차 협의

2005.01.21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국 정부간 2차 협의
2005.01.28	수산물양국간 협의
2005.01.31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협의기간 종료
2005.02.04	한국이 WTO 패널 설치 정식 요청
2005.02.17	WTO 분쟁조정기구(DSB) 회의에서 논의
2005.03.21	WTO 분쟁조정기구(DSB) 회의에서 패널설치 최종 결정
2006.01.20	양국간의 김 IQ분쟁 최종 타결
2006.05.23	제18회 한일 수산물 무역 실무회의 개최
2006.07.28	김 재입찰회 및 상담회 개최

자료: 외교통상부 아태담당 내부자료(2007년).

주: WTO에 제소하면 피제소국은 30일 이내에 '양자협약'에 응해야 하고, 제소후 60일 이내에 양자협약에서 되지 못하면 제소국은 '패널설치(본격적인 재판 회부에 해당)'를 WTO에 요청할 수 있음.

또한, 우리 정부는 일본의 김 수입쿼터제도가 GATT 1994 11조 및 농업에 관한 협정 4조 2항에 위배되며 일본의 수입쿼터제 운영의 불투명한 행정절차 또한 GATT(1944) 10조 3항과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 1조에 부분적으로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GATT(1994) 11조는 수출입에 있어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에 대한 조항으로 체약국은 타 체약국의 물품수입에 대하여 관세, 조세, 과징금, 할당제(쿼터) 등을 통한 어떠한 금지나 제한도 설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에 관한 협정 4.2조에서는 예외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관세로 전환하도록 요구된 어떠한 종류의 조치(수입수량제한, 수출자율규제, 임의적인 수입허가, 최소수입가격 등)도 유지 또는 이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고, 수량제한 금지에는 여러 가지 예외가 허용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자국의 김 수입쿼터제가 이러는 예외조항 중 2항 (C)의 (i), 즉 시장판매 또는 생산이 허가된 동종 국내 생산품의 수량 또는 동종 국내 생산품이 없는 경우, 동 수입품으로 직접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생산품의 수량을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본 스스로도 수산물 수입쿼터제도가 WTO 규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어떤 국가가 일본 수산물 수입쿼터제도를 문제 삼을 때마다 수입쿼터 물량을 늘려주는 타협안을 제시함으로써 수입쿼터제도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즉, 일본이 표면적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수산물 수입쿼터제도가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굳이 수입쿼터 물량을 늘려주면서 타협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실제로 일본 국내적으로 수산물 수입쿼터 제도를 유지해야 할 부담에서 자유로운 외부성이나 경제 산업성의 관계자들은 일본의 수산물 수입쿼터 제도가 WTO에 제소되면 일본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3. 김 수입쿼터분쟁합의 결과

우리 정부의 WTO제소 후, 패널회의가 우리 측에 최대한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증거자료를 적극 제시하고 일본 현지 방문 및 면담을 통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여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의 결과를 이끌어 내었다. 첫째, 충분한 수입쿼터 물량 확보, 둘째, 한국과 중국의 수입쿼터물량 분리 배정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동 조치로 중국과 직접적 경쟁을 당분간 회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렇게 확보된 시간을 바탕으로 한국산 김의 품질경쟁력 및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게 되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다. 2015년까지 10년에 걸쳐 1200만속까지 단계적으로 물량 증가시키는데 합의하였는바, 이를 통해 얻게 될 이득을 환산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즉, 금번 합의를 통해 약5334만속의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며 한국산 김의 대일수출가를 10\$로 하여 상기이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5334만속 \times 10\$ = 533,400,000\$ = 533,400,000,000원$ 이 된다. 이를 통해 2004년, 연간평균 소득 기준으로 어가소득을 2.81%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³¹⁾.

〈표 9〉 향후 김 수출물량 예상 이득 환산표

(단위:만속)

연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합의내용적용시(A)	350	444	538	632	726	820	914	1008	1102	1200
종래물량유지시(B)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차액(C=A-B)	110	204	298	392	486	580	674	768	862	960
합 계(ΣC)										5334

자료: 외교통상부 아태담당 내부자료(2007년). 위의 표는 '수입쿼터물량을 구분 증량시킨다'는 가정 하에 작성된 것이며, 현재 매년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 시킬지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음. 매년 증량 수준은 매년 수산당국 간 합의를 통해 양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주:A(합의내용적용시):05년 물량인 240만속에서 2015년까지 1200만속이 되게 하기 위해선 단계적으로 매년 약 96만속을 10년간 증가시켜 야함. B(종래물량유지시): 04년 수입쿼터물량이 유지된다고 가정한 것임. A와B의 차액에 대한 10년간의 합계(ΣC)는 약5334만속.

31) 10년간 이득의 총액= 533,400,000,000원이므로 1년간 평균 이득(D)은 $\frac{390,400,000,000}{10} = 39,040,000,000원$ 2004년 기준

우리 어가는 72,513가구이므로, 어가 1가구가 1년간 얻게 될 평균이득= $\frac{D}{\text{전체어가수}} = \frac{39,040,000,000}{72,513} \approx 538,380원$ 으로, 이는 2004년 어가소득 26,159,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2.81%에 해당된다.

V. 결 론

한일간의 무역분쟁으로 까지 확대될 수 있는 양국 간의 무역문제의 빈도와 현상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을 수 없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EU위주의 무역분쟁에 대한 사례분석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시아 주변국과의 관련분쟁에도 주의를 기울여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반덤핑과 같은 「산업피해 구제제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서 제기되는 피해산정에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크고, 덤핑 및 보조금 지급여부 등을 판정하기 위한 명료한 기준이 결여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산업(특히 중소기업) 보호라는 취지에서 상대국에 문제를 제기하고 보자는 식의 「내국민 우선주의」를 정책적으로 취하고 있는 것이 일반화되어가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주로 미국을 상대로 반덤핑관련 사례가 많이 보이고 있으나, 최근 10년 사이에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반덤핑 사례가 자주 발생되고 있다. 또한, 김IQ 합의는 일본 측에게 바람직한 한·일 경제협력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우리 측의 정당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각인시켜준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금번에 일본 정부가 약속한 1,200만속은 2004년도 김 IQ 물량인 240만속과 비교했을 때, 5배나 증가된 물량이며, 과거 16년간 대일 김 수출이 중단된 이후 재개되었던 1995년 키퍼물량이 20만속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60배나 증가된 획기적인 물량확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폭적인 김 IQ 물량 증량으로 인해 향후 우리기업이 김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싶어도 키퍼가 부족해서 수출하지 못하는 상황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어민들의 이익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한국의 일본과의 무역 분쟁대응 방안으로서 좀 더 세부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1세기에서도 공산품에 대한 반덤핑분쟁과 수산물의 수입키퍼분쟁 뿐만 아니라, 산업피해구제제도,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등이 중요한 분쟁예상 분야이다. 따라서 이들 분야에 대해서 국내기업의 일본시장 진출에 앞서 인식해야 할 것은 일본의 국내법에 대하여 더 많은 연구와 사례에 관한 정보수집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즉, 일본의 무역정책, 시장의 폐쇄성, 불공정 사항에 대한 해결책,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행정적인 지원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조사연구 및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도 및 감독미비로 인하여 국내수출업자들(특히 영세 중소기업 및 어민)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일본의 농수산물 수입정책에 있어서 아직 많은 품목에 대한 분쟁소지가 많은 제도를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분쟁 품목을 잘 파악하고 검토하여 제3국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개별국가들에 대한 제소가 빈번한 데에 비해, EU는 미국에 대해 전적으로 공동제소(제소건수 모두 공동제소)를 함으로써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일본관련 분쟁 사안에 대해서 이해관계국으로써 혹은 제3자 참가국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제시를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21세기에서도 농수산물에 대한 한·일간의 무역분쟁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국의 환경과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최우선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보다 까다로운 비관세장벽을 활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일본의 식품에 대한 PLS제도 전환으로 우리의 농수산물 전체의 신뢰도가 떨어져 대일 수출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2006년 9월에도 우리의 마늘종과 양상치가 동 제도 기준을 위반하여 큰 피해를 보았다.

넷째, 앞으로도 경제발전 제일주의에서 환경과 국민 건강 등의 다양한 가치관이 우선 시 되어 가는 상황에서 특히, 일본과의 관련 품목(농업 등)에 더욱 주의를 하여 통상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WTO의 분쟁해결제도 도입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분쟁당사국간의 합의를 통한 문제해결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분쟁해결절차상의 협의채널을 최대한 활용하고 상호 통상적 마찰의 여지를 줄여서, 앞으로 양국의 협력관계 및 새로운 자유무역 체결에 걸림돌로 작용되는 일이 없도록 다방면으로 외교적 채널을 가동하여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유진수, 「日本の 貿易障壁」,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2.
- 외무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결과 및 평가」, 1995.
- 대한무역진흥공사·한국섬유직물수출조합, 「WTO협정과 새로운 수출기회」, 1996.
- 신유균, 「WTO체제와 주요국의 세이프가드제도」, 두남출판사, 1997.
- 대한무역진흥공사, 「일본의 비관세장벽 현황」, 1998.
- 윤영각, 「WTO 시대의 반덤핑제도」, 한송, 1998.
- 외교통상부, 「우리나라와 관련된 분쟁현황」, 다자통상협력, 2002 ~ 2004.
- WTO회원국 비관세장벽 제출 리스트, 2004.
- 수산물 수출입정보시스템 자료, 2005.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내부자료, 2007.
- 외교통상부 아태담당 내부자료, 2007년.
- 채육, “WTO분쟁해결 사례 연구: 일본의 주세에 관한 분쟁”, 대외정책연구소, 1997.
- 고준성, “미국, 쇠고기 문제를 WTO체제 출범 이후 반덤핑법의 운영에 대한 분석 평가” 「통상법률」, 법무부, 2001.
- 이종원, “WTO관련 환경규정에 관한 고찰”, 「상사법 연구」, 제19권3호, 한국상사법 학회, 2001.
- 이종원, “개발도상국의 분쟁사례를 통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국제상학」, 제18권제1호, 한국 국제상학회, 2003.

- 村多脱夫, “日本の反ダンピング制度の現況과 運用”, 弘前大學經濟研究, 제18호, 1999.
- 日本 通商産業省, 「纖維セーフガードに係する國內規則の見直しについて」, 日本輸出入取引審議會 第1回特別部會 議事要地, 2000.
- Brewer, T. L. and S. Young. “WTO Disputes and Developing Countries”, Journal of World Trade, 1999.
- Chaytor, B., “Dispute Settlement under the GATT/WTO: The Experience of Developing Nations. In *Dispute Resolution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ds” eds, J. Cameron and K. Campbell, London: Cameron, May, 1998.
- Jackson, J. H., “Dispute Settlement and a New Round”, in J. J. Schott, *The WTO after Seattl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0.
- McMahon, J., “Going Bananas? Dispute Resolution Agriculture, In *Dispute Resolution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ds., J. Camerron and K. Campbell, London: Camernon May, 1998.
- Petersmann, E.,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the Evolution of the GATT Dispute Settlement System Since 1948”, in R. Howse, *The World Trading System*, 1999.
- WTO, “More Delegation and Structural Reforms should help Japan Stimulate Domestic Demand and Encourage Market Access”, Press/TPRB, 1998.
- 通商産業省, Japanese Market Report Database, <http://www.miti.go.jp>
- _____, First Step in Exporting to Japan, <http://www.miti.go.jp>
- _____, Changing Face of Japanese Retail, <http://www.miti.go.jp>
- _____, 1999年版 不公正貿易報告書, <http://www.miti.go.jp>
- _____, 纖維セーフガード制度の概要, <http://www.miti.go.jp>
- _____, 平成9事年度における輸入通關後の税關調査績について, <http://www.mof.go.jp>
- [http : //www.wto.org/dispute Settlement/](http://www.wto.org/dispute%20Settlement/) 2007년 1월 7일.
- [http : //www.ldcs.org/](http://www.ldcs.org/) 2007년 1월 8일.